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 12 선고 2019가단75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변론 종결 2020. 11. 17

판결 선고 2021. 1.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B은 72,315,000원, 피고 주식회사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6,315,000,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0,000,000원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갑제 1-5호증의 기재,이 법원의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묘에서 斤라는 상호로 등산용품을 판매하는 개인사업자로,2017년 결산 과정에서 매입세금계산서가 부족해지자 피고 B으로부터 주식회사 C, 주 식회사 D 발행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하고(이하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 행약정'이라 한다),그 대가로 현금으로 2017. 12. 15.경 피고 B에게 6,000,000원을, 2017. 12. 15.경부터 2017. 12. 28.까지 주식회사(그에게 36,315,000원을,2018. 1. 10.주식회사 D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은 2017. 12. 1.부터 2017. 12. 22.까지 543,940,908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발급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 주식회사 C과 피고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소외 G은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행위 등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고합132특정범 죄 가중처 벌등에 관한법 률위 반(허 위 세금계산서 교부등)죄 로 기 소되 어 2020. 5. 13.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및 벌금 23억 원을 선고 받았고,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

다. 피고 B 또한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59) 이를 취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약정에 따라 피고들이 발행해 준 허위세금계산서 대한 대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계 72,31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들이 국세청에 매출 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게 되었으 므로,피고들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약정에 따라 피 고들이 국세청에 매출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또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원고와 피고들의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수취 발행행위가 세무당국으로 부터 발각되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라는, 즉 형사범죄인 허위세금계산서를 통한 세금포탈 목적의 달성할 수 없게 되었음을 전제 로 범죄 대가로 지급된 돈을 반환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은 돈을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전성준